
24년도 차량기지, 사상분소 청소 용역계약 [계약특수조건]

2023. 12.

차량기지, 사상분소 청소 용역 계약특수조건

제1조 (용역업무의 수행)

-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장소에 사전 배치하여 용역업무 인수인계 및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조 (청소원의 고용)

-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기지 청소 인원을 전체(청소반장 포함 총2명)의 고용하여 차량기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.(사상분소 청소는 역사 용역원 활용 가능)

제3조 (청소원에 대한 책임)

- ①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의 건강, 신원, 풍기 및 작업 규율의 유지,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제4조(현장대리인 권리와 의무)

- ① 계약상대자는 청소업무 착수 전에 청소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변동이 있을 때 또한 같다.
- ②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청소책임자는 계약업무 이행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임무를 맡게 하여야 한다.
 1.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등 작업상의 지휘명령
 2.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발주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
 3. 발주자의 계약서에 따른 주문사항의 업무처리
 4.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규율.질서유지 및 기타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

제5조 (결원 보충)

-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.

제6조 (관계법령의 준수)

-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원 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1.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
 2. 건강보험가입
 3. 고용보험 가입
 4.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
 5. 국민연금 가입
 6. 피복지급(피복 및 작업화)
 7. 임금지불 확인대장 비치(저임금 방지 감독)
-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정한 각종 보험 가입 및 피복지급 또한 최저임금이상 보장 및 확인을 위하여 발주자의 요청 시 임금지불 확인대장을 제출하여야한다.

제7조 (적정임금의 보장)

-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기초로 한 직접 노무비는 원가계산상의 금액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, 그 이하로 임의 감액 조치할 수 없다.
- ②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, 계약 내역서상 임금에 대한 지급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 직원의 증거서류 열람 또는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

응하여야 한다.

- ③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매월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미지급 임금만큼 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.
- ④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8조 (용역업체 관리)

-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·지도할 수 있다.

제9조 (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)

-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까지 기존업체로부터 각종 시설 및 작업현황 등에 대한 업무인수를 확실히 받아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인수인계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차기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(착수지연 등)에 대하여 발주자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 (결원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급)

- ① 청소용역 인원에 결원(결근포함)이 있을 때에는 월 용역비 지급시 결원(결근포함)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하고 지급한다.

제11조 (계약기간 연장)

- ① 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안전관리 및 사고책임)

- ① "계약상대자"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교육 등 예방활동은 물론,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, 전동차청소작업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화재, 기타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,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② "계약상대자"는 용역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류를 지급하고 용역업무 수행 시 관계법령(산업안전보건법 등)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"계약상대자"의 용역원은 차량기지 내 선로를 무단횡단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④ "계약상대자"는 당일 업무수행 전 용역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⑤ "계약상대자"는 작업 및 휴식장소 등을 "발주자"에게 요청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 및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.
- ⑥ "계약상대자"는 업무수행에 있어 낙하 및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⑦ 청소 작업시 전동차가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 후 승.하차하여야 한다.
- ⑧ "계약상대자"는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상기 1~7항 및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 또는 이행치 아니하여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.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⑨ "계약상대자"는 귀책사유로 인해 "발주자"에게 인적,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"계약상대자"는 보상,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.
- ⑩ "계약상대자"는 작업도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⑪ "계약상대자" 및 "계약상대자"의 용역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"발주자"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

해 "계약상대자"는 배상 책임을 진다.